



제710호. 2018. 3. 22.(목)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Jeju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 Culture and People

# 도 보

선	기 관 의 장
결	

## 목 차

### 조 례

제2027호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 3  
 제2028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공 고

제2018-863호 영어교육도시 영문간판 설치지원 사업 공고 ..... 5

### 서귀포시

서귀포시 공고 제2018-764호 「2018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공개 모집 ..... 7  
 서귀포시 공고 제2018-765호 「노지감귤 수출농가 인센티브(유기질비료) 지원계획」 공고 ..... 8

회 람									
--------	--	--	--	--	--	--	--	--	--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년 3월 20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8년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027호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고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며,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4·3의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4. 제주특별자치도 합의를행정기관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4.3희생자추념일의 공휴일 지정을 적극 홍보하고 공지하며,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년 3월 20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8년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028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을 “유치계획·장기수지전망·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제4호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전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863호

**영어교육도시 영문간판 설치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어권 도시 분위기를 창출하는 차별화를 통해 영어교육도시의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영문간판을 설치하는 상업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0.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영어교육도시 상업시설 중 5~10개 업체
- 지원 내용 : 간판제작·설치비 1개 업체 당 50%, 최대 1백만 원 지원
- 총 사업비 : 5,000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 기간 : 2018. 3 ~ 6월

2. 사업신청

- 신청자격
  - 공통 :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주소지 소재 상업시설
  - 국문간판 설치·보유 업체 또는 간판 신규 제작 예정 업체
    - \* 옥외광고물 미신고 업체도 신청 가능
    -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도(행정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기간 : 2018. 3. 21.(수) ~ 4. 30.(월)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 수 처 : 영어교육도시사무소
  -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86(1층), ☎(064)710-3434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붙임 서식1 참조, 현장사진·업체 위치도 첨부)②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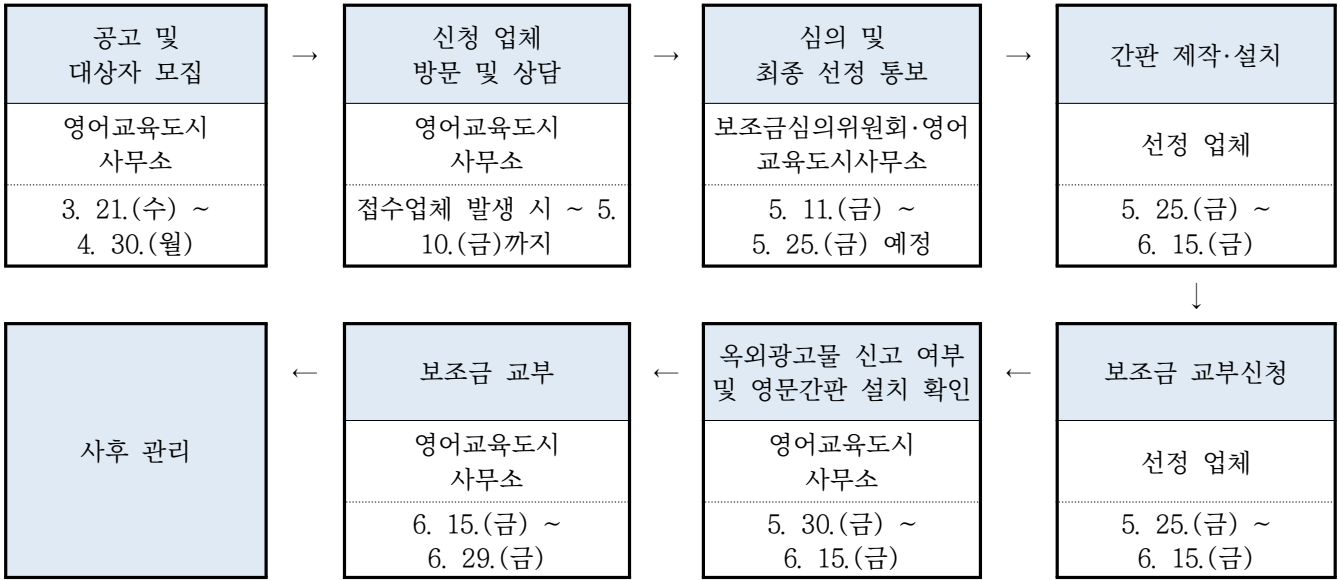
3. 심사 및 통보

- 자체 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선정기준 : 예산 및 법적 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접수 선착순
  - (예산타당성) 보조금 지원요구액의 적절성
  - (법적타당성) 설치 위치, 업소 간판 총 수량 등의 합법성

〈 간판 지원 설치 시 준수규정〉	※ 신청 업체 현장방문 실시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li> <li>· 「제주옥외광고물 문화조성을 위한 모델 및 가이드라인」</li> <li>· 「영어교육도시 지구단위 계획」 등</li> </ul>	

- 결과통보 :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

4. 지원절차



서귀포시 공고 제2018-764호

「2018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2018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감협,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1일

서 귀 포 시 장

1. 신청자격

- 농·감협 및 영농법인 등 노지감귤수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2. 지원 대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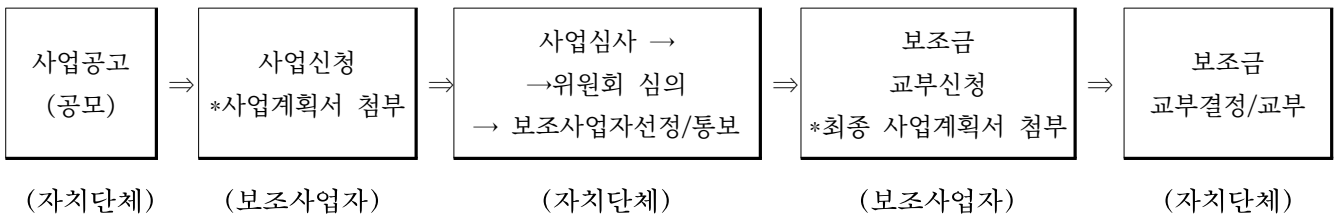
사업명	예산과목	사업비 (백만원)	보조율	사업추진기간	문의처
2018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100%	2018.3~12월	감귤농정과 (760-2723)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3. 21 ~ 3. 30.(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유통지원담당부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증빙서류 각 1부)등
- 문의처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760-272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자체 심사 : 신청 자격 기본 요건 충족여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후 자체 심사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대상자 선정 심의 상정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서귀포시 공고 제2018-765호

「노지감귤 수출농가 인센티브(유기질비료)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노지감귤 수출농가 인센티브(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농감협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1일

서 귀 포 시 장

1. 지원대상

- 2018년도 노지감귤 수출계획이 있는 농·감협
  - 500kg 이상 수출 참여 농가

2. 지원 대상사업

사 업 명	예산과목	지원규모 (백만원)	보조율	사업추진기간	문의처
노지감귤 수출농가 인센티브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	정액보조	'17. 4월 ~ 12월	감귤농정과 (760-2725)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3. 21 ~ . 3. 30.(금)일 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또는 등기우편·팩스 신청)
- 접수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유통지원담당부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문 의 처 : 감귤농정과 (☎ 064)760 - 2725)